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##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안

(이상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1

발의연월일: 2013. 8. 27.

발 의 자:이상철・구재용 의원

(찬성자 : 6인)

#### 1. 제안이유

서해 5도 항로의 기상악화 시 운항이 제한되어 도서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 해상교통 수단을 확보하여 도서주민의 정주욕구를 고취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여건에 제약을 덜 받는 2,000톤급 이상전천후 대형여객선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해 5도 항로에 총 톤수 2,000톤급 이상, 속력 35노트 이상의 전천 후 대형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취항 후 3년간 운영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으로 부담하며, 옹진군에 지원금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시장은 재정자금을 옹진군수에게 교부하고, 여객선사가 매년 운영실 적을 정산한 증명서류와 함께 옹진군수에게 신청하는 등 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옹진군수는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 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함(안 제6조)

#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- 나. 비용추계서 1부.

####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서해 5도 지원 특별법」 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의거 서해 5도 항로의 기상악화 시 운항이 제한되어 도서주민의 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 해상교통 수단을 확보하여 도서주민의 정주 욕구를 고취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 후 대형여객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서해 5도 항로"란 인천항~백령(소청, 대청 경유), 인천항~연평(소 연평 경유) 항로를 말한다.
  - 2. "전천후 대형여객선"이란 총톤수 2,000톤급 이상, 속력 35노트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.
  - 3. "여객선사"란 『해운법』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서해 5도 항로에 전천후 대형여객선(이하 "여객선"이라 한다)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.
  - 4. "운영손실"이란 서해 5도 항로에 여객선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비 손실액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대상 및 기준) ① 지원대상은 여객선 취항 후 운영손실이 발생한 여객선사로 하며, 운영손실 지원금(이하 "지원금"이라 한다)은 예산 범위에서

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비율, 지원범위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금 지원기간은 여객선 취항일로부터 최대 3년간으로 한다.
- 제4조(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) ①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 자금(이하 "재정자금"이라 한다)으로 부담하며, 지원금의 일정액은 옹 진군에서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재정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.
- 제5조(지급절차) ① 지원금은 여객선 운영실적을 정산하여 제3조에 따라 여객선사에게 직접 지급한다.
  - ②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재정자금을 옹진군수에게 교부하고, 여객선사는 매년 정산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옹진군수에게 신청한다.
  - ③ 증명서류는 공인회계법인이 작성하여 공증된 재무제표를 말한다.
  - ④ 옹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, 직접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.
- 제6조(업무협약체결) 옹진군수는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.
- 제7조(관계 공무원의 조사) ① 시장 및 옹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과 관련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여객선사는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시정 요구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제3조제3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ul> <li>□ 서해 5도 지원 특별법</li> <li>○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</li> <li>○ 제5조(종합발전계획의 수립)</li> </ul>			
	<ul><li>□ 지방재정법</li><li>○ 제17조(기부・보조 또는 출현의 제한)</li></ul>			
	<ul> <li>□ 해운법</li> <li>○ 제2조(사업의 종류)</li> <li>○ 제4조(사업 면허)</li> <li>○ 제5조(사업 조건)</li> </ul>			
	<ul><li>□ 해사안전법</li><li>○ 제38조(선박 출항통제)</li></ul>			
	□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○ 제31조(선박출항통제)			
	"세부내용 별지 작성"			
관련법규 정비대상				
관련자료				

### 관련법령 발췌사항

#### □ 서해 5도 지원 특별법
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종합발전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,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  - 2. 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
  - 3.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·개발·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·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
  - 4. 교육·보건·의료·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 - 5. 도로·항만·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·정비에 관한 사항
  - 6.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·공급에 관한 사항
  - 7.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
  - 8.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·개발·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

#### □ 지방재정법

- 제17조(기부·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·보조·출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. <u>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</u>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- 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
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,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 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 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 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  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  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- 바.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 - 가. 소류지(小溜池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 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 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 - 사. 공유림 관리
 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  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- 가. 지역개발사업
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- 사. 자연보호활동
- 아. 지방1급하천,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 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
    -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보존 및 관리
  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  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#### □ 해운법

제3조(사업의 종류)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1.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: 국내항[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(常時)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
- 2.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: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
- 3.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: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
- 4.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: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

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

- 5. 순항(巡航) 여객운송사업: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, 식음료시설,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(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
- 6.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: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
- 제4조(사업 면허)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 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,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,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(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)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.
  -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·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(이하 "한정면 허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  -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제5조(면허기준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 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
  - 1.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
  - 2.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 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
  - 3.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
  - 4.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
  - 5.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(船齡)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

-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은지 여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2.6.1>
- 1.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
- 2. 제4조제2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
- 3.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
- 4.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항로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항로의 운항을 명하는 경우

#### □ 해사안전법

제38조(선박 출항통제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 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항통제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□ 해사안전법 시행규칙

제31조(선박출항통제)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.

#### 《별표 10》 여객선(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)

기상상태	출 항 통 제 선 박	통 제 절 차
풍랑 • 해일	1.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	○ 「해운법」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(이하 이
주의보	는 내항여객선 및 여객	표에서 "운항관리자"라 한다)는 풍랑ㆍ해일주
	용 수면비행선박. 다만,	의보 발효 시 기상상황을 종합분석할 것
	「기상법 시행령」 제8	○ 「해운법」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따른
	조제1항에 따른 해상예	"0 [ ]   [ 0 0 1 1 2 2 1 2 1 2 0 ]
	보구역 중 앞바다(이하	
	이 표에서 "앞바다"라 고 한다)에서 운항하는	○ 운항관리자는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및
	여객선과 총톤수 2,000	총톤수 2,000톤 이상 여객선에 대하여 출항을
	톤 이상 여객선은 해당	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통제권자에게 보
	항로의 실제 해상상태	고할 것
	를 감안하여 출항을 허용	○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및 운항관리자의 보 - 그 드 ○ 그러워서 케다 서비의 출화 서비로 거
	할 수 있다.	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여부를 결 정할 것
	2 교수그여 아에서 오하	○ 운항관리자는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
	2. 청구 [ 국 년에서 문항 하는 내항여객선. 다만,	
	해당 항로의 실제 해상	
	상태가 안전운항에 위	할 것
	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	│
	우에만 운항을 통제할	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여부를 결
	수 있다.	정할 것
		호취트레이라는 에어 타기트이라 이루어라고 그
풍랑・해일		출항통제권자는 해당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
경보, 태풍	모든 내항여객선	계제한시 출항신고 선박의 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.
주의보・경보		단 후 애킹 신틱의 출청글 충세야역약 안나.     
시정   1	모든 내항여객선(여객용	
킬로미	수면비행선박은	
티지카이	제외한다)	
시계 <u>이내</u> 제하시 시정		
제한시 시정   11		
킬로미	여객용 수면비행선박	
터   이내		
<u> </u>	 자: 해양경착서장	

- 출항통제권자: 해양경찰서장
- 적용제외: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,000톤 이상 여객선 중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 리체제 인증심사에 합격한 여객선은 출항통제대상에서 제외할 것. 이 경우 선 박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

-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  - 제3조(지원대상 및 기준) ① 지원대상은 여객선 취항 후 운영손실이 발생한 여객선사로 하며, 운영손실 지원금(이하 "지원금"이라 한다)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비율, 지원범위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   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금 지원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최대 3년간으로 한다.
  - 제4조(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) ①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(이하 "재정자금"이라 한다)으로 부담하며, 지원금의 일정액은 옹진군에서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    - ② 재정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.
-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운영손실 지원금 : 1,000백만원 × 3년 = 3,000백만원

나. 추계 결과

○ 총사업비 : 3,000백만원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사업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운영 지유	손실 원금	3,000	1,000	1,000	1,000	-
재 원 별	시비	1,500	500	500	500	_
	군비	1,500	500	500	500	_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(50%)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**붙임** 

4. 작성자 : 항만공항해양국 해양도서정책과장 이 상 욱

#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백만원)

						\	, , ,
	구 분	1차년도 (2013년)	2차년도 (2014년)	3차년도 (2015년)	4차년도 (2016년)	5차년도 (2017년)	계
세입	_	-	_	-	-	_	_
	소계	-	_	-	-	-	_
세출	운영손실 지원금	1,000	1,000	1,000	-	_	3,000
	소계	1,000	1,000	1,000	-	-	3,000
재	원 조달	500	500	500	-	-	1,500
국	- н]	-	_	_	-	-	-
	소 계	500	500	500	_	_	1,500
시비	일반회계	500	500	500	-	_	1,500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 금	-	-	-	-	-	_
군・구비		500	500	500	-	-	1,500
민 간		-	-	-	-	-	-
기 타		-	_	_	-	-	-